



월간 뉴스레터

Monthly Newsletter of Hanul Choongjung LLC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18년 7월호

Contents

회계정보

- 비상장회사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관련 유의사항

세무 및 법률정보

- 국세청 사무처리규정 개정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 /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 8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5~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비상장회사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

[출처: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자료실, 2018.1.18]

개요

1.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개요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회사*는 '감사前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제출하여야 함

* (예시) 12월말 결산 법인의 2016년 12월 결산일 개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 시, 2017 사업연도('17.1.1 ~ 12.31.)에 대한 감사전 재무제표를 2018년 중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① (제출 서류) 회사는 외감법 시행령 제 6 조 제 3 항(붙임 1, 관련법규 참조)에 따라 공문과 함께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 감사전 재무제표는 외부감사 시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식 모두*를 의미

* 일부 누락 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별도로 감사전 연결재무제표(공문 포함)를 추가 제출

② (제출 방법) 「정보통신망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 형태*로,

* DART 편집기를 사용하여 작성한 파일(.dsd)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엑셀, PDF 등 기타 파일로 제출 가능

◦ 금융감독원 DART 접수시스템(<http://filer.fss.or.kr>) 내의 외부감사보고시스템에 회사가 직접 제출

③ (제출기한) 외감법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에 따른 아래의 기한 내에 모든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기한 >

구 분		제출기한
개별(별도) 재무제표		정기총회 6주일 전*
연결 재무제표	일반기업회계기준 등 적용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2017년 12월 결산법인은 2018.4.2.(월)까지 제출)
연결 재무제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정기총회 4주일 전***

* 희생절차 진행 중인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

*** 희생절차 진행 중인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기한 예시 >

주총예정일	재무제표	제출기한	
'19.3.22.(금)	개별(별도)재무제표	정기총회 6주 전	'19.2.7.(목) 24시까지
'19.3.22.(금)	연결재무제표 (K-IFRS 적용기업)	정기총회 4주 전	'19.2.21.(목) 24시까지
'19.3.28.(목)	개별(별도)재무제표	정기총회 6주 전	'19.2.13.(수) 24시까지
'19.3.28.(목)	연결재무제표 (K-IFRS 적용기업)	정기총회 4주 전	'19.2.27.(수) 24시까지
'19.3.29.(금)	개별(별도)재무제표	정기총회 6주 전	'19.2.18.(월) 24시까지
'19.3.29.(금)	연결재무제표 (K-IFRS 적용기업)	정기총회 4주 전	'19.3.1.(금) 24시까지

◦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이 시차를 두고 감사인에게 제출되는 경우, 증선위에도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을 각각 제출할 수 있으나, 모두 법령에서 정한 기한* 이내여야 함

* 감사인의 재무제표 기말감사를 위한 현장 감사착수일이 법정 제출기한보다 이른 경우,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출기한 이전이라도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제출 시 증선위에도 동시에 제출

④ (제재) 제출의무 미준수(미제출, 지연제출, 부실제출 등) 시,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외감법 제 20 조③항 6 호)

◦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위원,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해임권고 및 회사에 대하여 감사인 지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외감법 제 16 조②항)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2.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가. 제출방법

① (인터넷 접속) 회사의 '고유번호+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금융감독원 DART 접수시스템(<http://filer.fss.or.kr>)에 로그인 후, 우상단의 '외부감사보고시스템'을 클릭하여 이동

※ 감사전 재무제표는 비공개대상이므로, 전자문서 제출 시 외부로 공시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과는 분리하여 운영

< DART 접수시스템 화면 >



② (기본정보 입력)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대상 사업연도와 관련된 회사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다음'버튼을 클릭

◦ 수정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버튼을 클릭하고 해당항목을 수정한 후 '저장'버튼 클릭

◦ '당기 사업기간'은 '감사인 선임기간'과 동일하게 입력

※ 기재상 주의사항은 기본정보 조회 화면에 각주로 첨부

< 기본정보 조회 화면 >

기본정보	재무서류입력	입수현황조회																										
<p>● 기본정보조회</p> <table border="1"> <tr> <td>회사 고유번호</td> <td>00000000</td> </tr> <tr> <td>법인등록번호</td> <td>1111112222223</td> </tr> <tr> <td>사업자 등록번호(본점)</td> <td>000000000</td> </tr> <tr> <td>회사명</td> <td>주영서비스</td> </tr> <tr> <td>법인 구분</td> <td><input type="radio"/>주권상장법인 <input type="radio"/>특정비상장법인 <input type="radio"/>기타</td> </tr> <tr> <td>담당자 전화번호</td> <td>-</td> </tr> <tr> <td>팩스번호</td> <td>-</td> </tr> <tr> <td>우편번호</td> <td>07321</td> </tr> <tr> <td>주소</td> <td>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여의도동, 한영빌딩)</td> </tr> <tr> <td>당기사업기간</td> <td>-</td> </tr> <tr> <td>감사인 선임기간</td> <td>-</td> </tr> <tr> <td>연기감사의견</td> <td><input type="radio"/>있음 <input type="radio"/>감사의견 적정 <input type="radio"/>감사의견 적정미치 (한정, 부적정, 의견거함)</td> </tr> <tr> <td>외부감사인</td> <td>연기 <input type="text"/> 선택 달기 <input type="text"/> 회계법인 <input type="text"/></td> </tr> </table>			회사 고유번호	00000000	법인등록번호	1111112222223	사업자 등록번호(본점)	000000000	회사명	주영서비스	법인 구분	<input type="radio"/> 주권상장법인 <input type="radio"/> 특정비상장법인 <input type="radio"/> 기타	담당자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우편번호	07321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여의도동, 한영빌딩)	당기사업기간	-	감사인 선임기간	-	연기감사의견	<input type="radio"/> 있음 <input type="radio"/> 감사의견 적정 <input type="radio"/> 감사의견 적정미치 (한정, 부적정, 의견거함)	외부감사인	연기 <input type="text"/> 선택 달기 <input type="text"/> 회계법인 <input type="text"/>
회사 고유번호	00000000																											
법인등록번호	1111112222223																											
사업자 등록번호(본점)	000000000																											
회사명	주영서비스																											
법인 구분	<input type="radio"/> 주권상장법인 <input type="radio"/> 특정비상장법인 <input type="radio"/> 기타																											
담당자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우편번호	07321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여의도동, 한영빌딩)																											
당기사업기간	-																											
감사인 선임기간	-																											
연기감사의견	<input type="radio"/> 있음 <input type="radio"/> 감사의견 적정 <input type="radio"/> 감사의견 적정미치 (한정, 부적정, 의견거함)																											
외부감사인	연기 <input type="text"/> 선택 달기 <input type="text"/> 회계법인 <input type="text"/>																											

- "회사 고유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본점)", "회사명", "우편번호", "주소"의 수정은 DART접수 시스템 (Info.fis.or.kr)에서 수정하셔야 합니다. (수정 후 등 시스템에 자동반영)
 - 외부감사인원에 회계법인은 법인명만 (ex. 삼일) 감사관은 숫자만 (ex. 121) 입력하셔야 합니다.
 - 연기감사인이 없거나 일일감사를 실시한 경우 연기감사인원을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 감사인원은 공백없이 정확히 입력하세요.
 - 1 주권상장 법인이란, 유가 증권시장인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을 의미 합니다. 따라서 채권 상장법인은 주권상장법인이 아닙니다.
 - 2 특정 비상장 법인이란 자산 1000억 이상인 경우 소유와 경영이 미 분리된 비상장법인으로서 감사인 지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역사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출 서류 선택 및 공문 샘플 다운로드) 기본정보 입력 후, [서류제출]-[외감법인]-[감사전 재무제표]*를 선택하고 '동의', '예'버튼을 차례로 클릭 한 후, '다음' 버튼 클릭

* 감사전 연결재무제표도 제출해야 하는 회사의 경우, 제출서류로 [감사전 연결재무제표]를 선택하여 별도로 추가 제출

◦ [공문 및 첨부서류 샘플 다운로드]에서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에 필요한 공문 샘플* 다운로드 가능

* 회사의 자체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함

< 제출 서류 선택 및 공문 샘플 다운로드 화면>

<p>● 서류제출</p> <table border="1"> <tr> <td>외감법인</td> <td><input type="radio"/>외감계약신청보고 <input type="radio"/>외감대상제외신청 <input type="radio"/>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input type="radio"/>감사전 연결재무제표 제출</td> </tr> <tr> <td>감사인</td> <td><input type="radio"/>감사인 지정(재지정) 신청 <input type="radio"/>지정관련자료(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등) 제출 <input type="radio"/>외감계약해지보고</td> </tr> </table>		외감법인	<input type="radio"/> 외감계약신청보고 <input type="radio"/> 외감대상제외신청 <input type="radio"/>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input type="radio"/> 감사전 연결재무제표 제출	감사인	<input type="radio"/> 감사인 지정(재지정) 신청 <input type="radio"/> 지정관련자료(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등) 제출 <input type="radio"/> 외감계약해지보고				
외감법인	<input type="radio"/> 외감계약신청보고 <input type="radio"/> 외감대상제외신청 <input type="radio"/>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input type="radio"/> 감사전 연결재무제표 제출								
감사인	<input type="radio"/> 감사인 지정(재지정) 신청 <input type="radio"/> 지정관련자료(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등) 제출 <input type="radio"/> 외감계약해지보고								
<p>● 제출자료에 대한 책임은 귀사에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p> <p>● 기본정보를 수정 또는 확인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예</p>									
<p>● 공문 및 첨부서류 샘플 다운로드</p> <table border="1"> <tr> <td>감사인선임 관련</td> <td>외감계약신청보고 공문 감사의 선임승인서 감사인선임위원회 의사록 외부감사인 교체서류서 연기감사인의 외부감사인 변경통지서 (연기감사의견 적정미치 경우)</td> </tr> <tr> <td>감사인지정 관련</td> <td>1-1. 감사인 지정 신청 공문 (상장예정) 1-2. 감사의 지정요청서(상장예정) 2-1. 감사인 지정신청 공문 (회사요청) 2-2. 감사의 지정요청서(회사요청) 3. 감사인 재지정신청 공문 4. (감사인지정 관련 자료)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등</td> </tr> <tr> <td>계약해지 및 제외 관련</td> <td>외부감사계약 해약 신청 외감대상 제외 요청</td> </tr> <tr> <td>감사전재무제표 제출</td> <td>감사전 재무제표</td> </tr> </table>		감사인선임 관련	외감계약신청보고 공문 감사의 선임승인서 감사인선임위원회 의사록 외부감사인 교체서류서 연기감사인의 외부감사인 변경통지서 (연기감사의견 적정미치 경우)	감사인지정 관련	1-1. 감사인 지정 신청 공문 (상장예정) 1-2. 감사의 지정요청서(상장예정) 2-1. 감사인 지정신청 공문 (회사요청) 2-2. 감사의 지정요청서(회사요청) 3. 감사인 재지정신청 공문 4. (감사인지정 관련 자료)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등	계약해지 및 제외 관련	외부감사계약 해약 신청 외감대상 제외 요청	감사전재무제표 제출	감사전 재무제표
감사인선임 관련	외감계약신청보고 공문 감사의 선임승인서 감사인선임위원회 의사록 외부감사인 교체서류서 연기감사인의 외부감사인 변경통지서 (연기감사의견 적정미치 경우)								
감사인지정 관련	1-1. 감사인 지정 신청 공문 (상장예정) 1-2. 감사의 지정요청서(상장예정) 2-1. 감사인 지정신청 공문 (회사요청) 2-2. 감사의 지정요청서(회사요청) 3. 감사인 재지정신청 공문 4. (감사인지정 관련 자료)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등								
계약해지 및 제외 관련	외부감사계약 해약 신청 외감대상 제외 요청								
감사전재무제표 제출	감사전 재무제표								

* 공문양식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경우
 * 익스플로러의 인터넷 옵션에서 'URL을 항상 UTP-8로 보냄' 항목을 해제하세요.

④ (신고 사항 입력)

❶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신고'에 각 신고 사항* 을 입력

* 회생절차 진행여부, 적용회계 처리기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 사업연도 종료일, 정기주총 개최 예정일, 감사전 개별(별도) 재무제표 제출일 등

❷ 11 번 항목에서 재무제표의 종류마다 '제출', '미제출'을 선택한 후

❸ 12 번 항목에서 공문과 재무제표를 첨부한 뒤 '제출' 버튼 클릭

❹ 공인인증서 팝업창에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붙임 2,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신고서식)

<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신고 화면 >

●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신고

1. 회사명	문영서버통		
2. 회사고유번호	00000000		
3. 법인등록번호	1111112222223		
4. 회생절차 진행 여부	회생절차 진행중		
5. 적용 회계처리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6.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여부	해당		
6-1.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7.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여부	해당없음		
8. 사업연도 종료일	20171130	YYYYMMDD	
9. 정기주주총회 개최 예정일	20170104	YYYYMMDD	
10. 감사전 개별(별도) 재무제표 제출일	20170101	YYYYMMDD	

11. 제출할 감사전 개별(별도) 재무제표의 종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제출	제출	제출	미제출	제출

12. 제출할 문서 형부		
12-1. 감사전 개별(별도) 재무제표 제출 공문		찾아보기...
12-2. 감사전 개별(별도) 재무제표 (.dsd파일)		찾아보기...
12-3. 감사전 개별(별도) 재무제표 (기타파일)		찾아보기...

➡ 제출

◦ 감사전 연결재무제표 제출대상 회사는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신고서식과 감사전 연결재무제표 제출 신고서식을 별도로 분리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함

◦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시 회사는 반드시 회사명 및 대표이사 직인이 있는 공문(자유 양식, 직인생략 불가)을 첨부해야 하며

- 공문에는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7 조 제 3 항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합니다.”라는 내용 포함

◦ 회사가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시스템에 첨부되는 파일형식은 DART 편집기를 사용하여 작성한 파일(.dsd)*을 원칙으로 함(동 프로그램은 DART 접수시스템에서 다운로드)

*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DART 공시 단계가 아님을 고려하여 , DART 편집기로 작성 후 저장된 파일(.dsd)형식과 저장 이후 공시목적에서 전자서명 후 생성된 파일(.drt)형식 중 저장된 파일(.dsd)형식으로 접수

- 다만, 작업시간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MS 엑셀, PDF 형식 등도 제출가능

◦ 회사의 기 제출 파일이나 관련된 신고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기 제출 방법의 1~6의 과정을 처음부터 진행하여 오류가 없는 첨부파일과 함께 다시 신고

⑤ (제출화면 확인)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와 공문이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제출 완료 팝업창 통해 확인*

* 인터넷 연결 장애나 필수 사항 기재 오류 및 누락 등으로 제출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의 제출 팝업창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제출 완료 확인 화면 >

기본정보 제출서류입력 접수현황조회 개발중회사 님이 로그인하셨습니다. 2018년 01월 17일

⑤ 감사전재무제표 제출 신고

1. 회사명	개발중회사
2. 회사고유번호	00000000
3. 법인등록번호	1111112222223
4. 회생절차 진행 여부	회생절차진행중
5. 적용 회계처리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6.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여부	해당없음
6-1.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7.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여부	해당없음
8. 사업연도 종료일	20171231
9. 정기주주총회 개최 예정일	20170604
10. 감사전 개별(별도) 재무제표 제출일	20170901

11. 제출할 감사전 개별(별도) 재무제표의 종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연결포괄표	주석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12. 제출할 문서 첨부

12-1. 감사전 개별(별도) 재무제표 제출 공문	C:\Users\Wito015Wde\찾아보기...
12-2. 감사전 개별(별도) 재무제표(.dod파일)	찾아보기...
12-3. 감사전 개별(별도) 재무제표(기타파일)	C:\Users\Wito015Wde\찾아보기...

제출

⑥ (접수현황 조회) 제출 후에, 회사는 접수 현황 조회를 통해 제출여부와 기재한 신고 사항을 확인* 할 수 있음

* 제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접수현황 조회 화면으로 넘어가며, 보고 구분은 감사전 재무제표로 선택

< 접수현황 조회 화면 >

기본정보 제출서류입력 접수현황조회 개발중회사 님이 로그인하셨습니다. 2018년 01월 17일

⑥ 접수현황조회

보고구분: 감사전 재무제표 접수일: 2017.12.16 ~ 2018.01.17 검색

[현재검색페이지 : 1/1] [검색 건수 : 1]

접수일	회생절차 진행 여부	적용 회계처리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자산총액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여부	사업연도 종료일	정기주주총회 개최예정일	감사전 개별재무제표 제출일	감/개별공
2018.01.17	회생절차진행중	일반회계기준	해당없음	2조원 이상	해당없음	2017.12.31	2017.06.04	2017.09.01	제

2018년 7월호

나. 유의사항

①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 포함) 및 공문을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주석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및 공문을 모두 제출하여야 함

② 증선위에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함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법령에서 요구하는 재무제표 제출기한보다 일찍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증선위에도 동시에 재무제표를 제출

③ (기한내 제출 의무)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이 시차를 두고 감사인에게 제출되었다면 증선위에도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을 각각 제출할 수 있으나

◦ 가. 제출 방법의 ①~⑥ 과정을 처음부터 진행하여 공문과 함께 본문과 주석을 새롭게 제출하여야 하고

◦ 이는 모두 법령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연 시 제재가 있을 수 있음

④ 주석의 경우, 일부만 작성하여 제출 시 미제출로 간주하며, 반드시 전체 주석을 제출하여야 함

⑤ 감사전 재무제표 증선위 제출 후, 재무제표 금액 등이 변동되더라도 기 제출된 재무제표를 정정 하지 않음

◦ 증선위에 제출한 재무제표와 최종 재무제표의 재무수치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제재조치는 없음*

* 다만,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수치가 관련 증빙·근거도 없이 작성되었다든지, 대차가 맞지 않는 등 허술하게 작성된 경우,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⑥ 비상장회사는 금감원 '외부감사 보고시스템'의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신고' 항목을 통해 제출

◦ DART 편집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 파일(.dsd)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엑셀, PDF 등 기타 파일형식으로도 업로드 가능

* 상장회사는 한국거래소 KIND 제출시스템(<http://filing.krx.co.kr>)에 접속하여 감사전 재무제표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제출

2018년 7월호

문의사항

3. 문의사항

□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홈페이지(<http://acct.fss.or.kr>) - 자료실 - 회계감독동향자료 게시판]의 '비상장회사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 우선 참조 요망

※ 유선확인 연락처

① 감사전 재무제표 제도* 관련: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 02-3145-7767, 7763, 7761

* 제출대상, 제출기한, 제출 서류 등

② 제출 시 전산시스템 오류 관련 : 금융감독원 정보화전략실

☎ 02-3145-5463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국세청 주요 사무처리규정 개정 내용

국세청 사무처리규정 개정

□ 2018. 7 월중 국세청이 개정 공포한 「사무처리규정」 중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2018. 7. 5.)

(1) 개정이유: 최근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18.2.13) 및 시행규칙('18.3.19)을 반영하여 기한후신고·무납부에 대해 결정·고지하는 경우를 과세예고통지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등 납세자의 사전적 권익보호 강화

(2) 주요 개정 내용

- ①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재결청 상향조정 (개정세법 반영):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소명안내를 받지 못하고 과세예고통지를 받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감사원의 기관감사 취지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재결청을 국세청장으로 상향 조정
- ② 청구인의 의견진술권 확대 및 준비시간 보장 (개정세법 반영):
청구목적에 경미하거나 법령해석사항인 경우도 의견진술권을 허용하고, 의견진술신청 안내시기를 회의 개최일 3일전에서 7일전으로 앞당겨 충분한 의견진술 준비시간 보장
- ③ 기한후신고·무납부에 대해 과세예고 통지대상 명확화:
기한후신고·무납부에 대해 결정·고지를 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 대상임을 명문화하여 통지누락에 따른 절차적 하자 발생 방지
- ④ 세무서관할 적부심에 대한 법령해석자문제도 안내:
세무서장이 불복사건 심리과정에서 법령해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해석과에서 법령해석자문을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내 규정 신설

2. 국세심사 사무처리규정 (2018. 7. 5.)

(1) 개정이유: 국세기본법 등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미비하거나 불분명한 규정 정비

(2) 주요 개정 내용

- ① 국세기본법 등 법령개정사항 반영
의견진술권 확대(진술제한 규정 삭제 등)
- ② 민간위원 위촉·해촉기준 정비
 - 위촉배제 대상 조정 [대형법인 퇴직 3년(5년→3년), 해당 재결청 퇴직 3년(2년→3년)]
 - 민간위원 자격요건 명문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3년 이상 경력요건(국세청은 5년) 신설]

3.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2018. 7. 10.)

- (1) 개정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처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개정의견을 반영하기 위함
- (2) 주요 개정 내용
 - ① 자율신고원칙 신설 (제3조)
신고서 작성은 납세자 스스로 해야 함을 명문화
 - ② 청렴서약서 작성 (제27조)
청렴서약서 작성 및 사적관계 신고의무 부여
 - ③ 조사절차 개선 (제36,37,39조)
자금출처 및 주식변동조사 서면확인제도 폐지
 - ④ 신고내용 확인 업무절차 개선 (제1조의2, 제17조~제23조)
 - 납세자와 직접적인 접촉없이 간접확인처리 원칙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
 -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문 교부, 처리결과 통지 등 업무절차 개선

최신 세무예규
판례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경락으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지방세운영과-1556, 2018.07.05)
 - 최근 조세심판원에서 경락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여 종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한 바 있음. 이는 종전의 세무처리와 상반되는 판단인 바(조심 2018지0309, 2018.5.16.),
 -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민사집행법」상 부동산 경매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부동산의 강제집행과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사법절차로써 경매의 효과가 해당 담보권과 그 후순위 권리를 소멸시키더라도 해당 담보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 지상권, 유치권 등의 권리는 승계될 수 있는 것이어서,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이 "종전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종전의 권리가 제한되고 하자를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원시취득에 해당되는 수용재결(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두34783 판결)과 경매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며,
 - 등록세의 지방세 편입(1977년) 당시부터 현재까지 경매로 인한 취득은 예외없이 유상(승계)취득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을 볼 때, 경락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 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이미 법해석의 기준으로 확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또한, 대법원 역시 근저당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6101 판결; 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다34822 판결; 대법원 1991.8.27. 선고, 91다3703 판결 등)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경락으로 인한 취득은 종전과 같이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재유권해석함.

■ 청구법인이 중국에서 쟁점수수료를 지급받고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다면 이는 중국 과세당국이 조세조약에 위배되게 징수한 것이므로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한·중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서1525, 2018.06.20)

- 청구법인이 중국법인에 지급보증을 해주고 보증수수료를 수령하면서 중국세무당국의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하여 이자소득 규정의 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000공고 2011년 제24호)는 안내에 따라 원천징수된 사안에 대하여
- 심판원은 「한·중 조세조약」 제5조에서 “이자라 함은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채권, 공채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채권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중국법인에게 신용을 보장해 주는 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쟁점수수료가 이자조항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동 조약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고, 동 조약 제22조에서 기타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 청구법인이 중국에서 쟁점수수료를 지급받고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다면 이는 중국 과세당국이 조세조약에 위배되게 징수한 것이므로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으로 보기 어렵고, 「한·중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함.

■ 법인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분할법인에서 신설법인으로 그대로 이기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장부가액과 사실상 취득가액인 감정가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세제-7445, 2018.06.04)

-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의 장부가액 등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일 뿐 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 고(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15895 판결),

2018년 7월호

-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법인장부 중 대통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이란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법인장부 중 대통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을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1491 판결 참조),
- 법인장부 중 대통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물건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3.10.24. 선고, 2013두11680 판결 ; 대법원 2013.8.23. 선고, 2013두7322 판결 참조)할 것임.
-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겠으나, 이 건 질의와 같이 법인의 물적분할(비적격) 당시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사실상 취득가액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고, 이처럼 신설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평가액이 확정되었으며, 법인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분할법인에서 신설법인으로 그대로 이기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장부가액(89억원)은 분할법인이 취득 당시 가액을 기재해 둔 것으로 이를 곧바로 신설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이기하였다 하더라도 장부가액과 사실상 취득가액인 감정가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업 무 소 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
|--------------------------------------------------------------------------------------------------------------------------------------------------------------------------------------------------------------------------------------------------------------------------------------------------------------------------------|-----------------------------------------------------------------------------------------------------------------------------------------------------------------------------------------------------------------------------------------------------------------------------------------------------------------------------|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Choongjung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 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